

## 2021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차 모집 공고

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1년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11월 1일

춘천국유림관리소장

### 1. 모집인원 : 9명

사업명	근무기관	모집인원	응시가능지역
산불전문 예방진화대	춘천국유림관리소 (화천경영팀)	9명	공고일 전일 주민등록 상 화천군 거주

\* 총 모집인원 9명 중 취업취약계층(60% - 6명 이상) 모집비율과 상이할 경우 일부 인원 미선발 예정(추후 공고 후 재선발)

### 2. 주요임무

- 1) 산불계도·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
- 2) 산불진화·뒤틀감시 및 장비의 유지관리
- 3) 산불예방·대응 관련 현장업무의 보조
- 4)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업무의 보조 및 숲가꾸기페트를 활동
- 5) 기타 산림사업 및 각종 행사 등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

※ 산불 발생 시 산불현장 투입 및 산불진화를 우선하는 업무임

### 3. 근무조건 및 임금

1) 근로기간: 2021. 11. 15. ~ 12. 17.

※ 기상여건 및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2) 근로장소: 산림내·외 및 산불현장, 산림사업지 등

3) 근로시간: 평일 09:00~18:00(1일 8시간)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주말은 10:00~19:00 근무로 함

-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
- 기상여건, 산불 발생위험도 및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중지 및 기간 변경 가능
- 휴게시간은 12:00~13:00(1시간)까지로 하며, 여건에 따라 조정

4) 근무일 및 휴일

- 주 5일(월~금)근무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토·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
- 대형산불기간 및 산불위험도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 근무일 기준 변경하여 토·일요일, 공휴일 등 운영(조정근무 시 사전공지 후 실시)

5) 임금 등 급여조건

- 1일 임금: 69,760원(조장수당: 월 50,000원 내 지급 가능)
  - \*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.
  - \*\* '21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변동가능
- 지급방식: 월급형태로 지급하며,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
  - \*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내부사정 등의 사유로 월초 지급 가능
- 4대 보험(국민연금, 산재·고용·건강보험료) 의무 가입
  - \*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

6) 기타 근로조건은 「근로기준법」과 「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」에 따름

### 4. 응시요건

근무지역	응시요건
춘천 국유림관리소 (화천경영팀)	- 선발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불발생 시 산불진화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* 산불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체력검정 실시(통과자) -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, 산림 및 과거 산불진화 참여 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자 - 공고일 전일 응시가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, 비상 소집시 1시간 이내 근무지로 도착 가능한 자

## 5. 선발방법 및 우대조건

### 1) 선발방법 (1차: 서류심사 / 2차: 체력검정·실습 / 3차: 면접심사)

#### ① 서류심사

**[서류제출]**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함 (접수기한 : '21. 11. 1.~11. 4.)

- 온라인 접수(워크넷 접수 및 전자우편 등)
  - \* 워크넷(www.work.go.kr) 접속하여 채용정보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
- 오프라인 접수(방문제출 및 우편 등)

신청서 교부 및 접수	주소
춘천국유림관리소 화천경영팀(☎ 033-442-2911)	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7길 17

- \*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 (붙임) 서식 인쇄사용 가능
- \* 방문접수는 일요일·공휴일은 불가, 우편접수는 제출기한('21.11.4.) 내 도착분에 한함.

**[서류심사]**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의한 성적 상위자 선발(1.5~2배수)

- 항목 : 우선선발 대상, 산림분야 종사경력, 근무여건, 세대주여부, 교육이수,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등
- \* 세부사항은 붙임(세부 심사 기준표) 참조

#### ② 체력검정·실습: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성적 상위자에 한하여 실시

- 일정 및 장소(※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지역별	일시	장 소	비 고
춘천국유림관리소 화천	2021.11.11.(목) 11:00 ~	서류합격자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	<b>화천군에서 실시</b>

- 체력검정 및 실습항목

구분	체력검정	실 습
항목	등짐폼프(15kg) 메고 걷기(2km)	기계톱 활용능력
상	체력검정 상위 15%이내	능수능란한 자
중	체력검정 상위 16~30%이내	활용가능한 자
하	체력검정 상위 31%이상	능력 미달자
비고	· 체력검정 30분 이상 소요자는 탈락 처리(실습 및 면접심사 불가)	

#### ③ 면접심사: 산림 및 산불관련 기초지식 등 질의응답식 면접 실시

- 일정 및 장소(※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지역별	일시	장 소	비 고
춘천국유림관리소 화천	2021.11.11.(목) 10:00 ~	춘천국유림관리소 화천경영팀 (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7길 17)	<b>화천경영팀 실시</b>

#### ④ 최종선발: 서류심사(50%)+체력·실습검정(30%)+면접심사(20%) 배점

- 비율에 의한 최종선발
  - \* 취약계층선발기준(비율 60%)에 의거 최종선발자는 목표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(향후 재선발 예정)

### 2) 참여 제한 및 우대조건

#### ① 참여 제한(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)

- 직접일자리 중복(동시) 참여자 및 연례적 반복참여자
  - \*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,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(최근 3년기준)
-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
  - \* 고소득자(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), 고액자산가(3억원 이상 재산 보유 가구)

- **(21년 한시적용 사항)**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\* 후 채용 가능

\* 감점비율은 사업특성,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, 선발총점의 **최소 20%이상** 감점할 권고

※ **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,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·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**

-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
-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(청각·간질, 정신질환 등)가 있는 자
- 심신허약자,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
  - \* 고혈압, 심신질환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
- 고교·대학(이하 “2년제·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”) 재학생
  - \* 다만,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, 방송통신대학·이전대학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
-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(지자체 등)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
  - \*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, 음주,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자

- 65세 이상 고령자 반복참여 허용
  - \*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% 이상을 감점
- ② **선발우대**(취업취약계층, 청년층은 서류심사 및 면접 시 가점부여 단, 기타 해당 법률에 의한 가산점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, 동점일 시 아래 순으로 우선 선발)
  - 취업취약계층(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)
    - \*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, 결혼이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위기 청소년, 성매매피해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행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 등(세부사항은 붙임4 참조)
  - 청년층(참여시작일 기준 만34세 이하)
  - 기타 해당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 부여를 정한 경우
    - \* 유의사항: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.
  - 총 인원의 취약계층(60%/ 6명 이상) 포함되어야 하므로 선발인원 비율 미달 시 일부인원은 재 선발 예정

### 3) 선발일정

- ① 모집공고 및 접수: 2021. 11. 1. 09:00 ~ 2021. 11. 4. 18:00
- ② 1차 심사 결과 통지 : 2021. 11. 10.(수) 18:00까지(개별 유선 통지)
- ③ 면접심사: 2021. 11. 11.(목). 10:00 [장소 : 화천경영팀]
- ④ 체력검정·실습 : 2021. 11. 11.(목) 11:00 [장소 : 화천경영팀]
- ⑤ 최종합격자 발표 : 2021. 11. 12.(금) 18:00까지(개별 유선 통지)
- ⑥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: 2021. 11. 15.(월)
- ⑦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: 2021. 11. 17.(수) 까지(직접·우편)

### 4) 제출서류

- 표준 신청서(참여 신청은 온라인, 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가능)
- 주민등록등본 1통(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)
- 구직등록증(고용센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상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요, 시·군에 구직등록자는 온라인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제출 필요)
- 신체검사서(선발된 자에 한함)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미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 제출)
- 각 우대조건에 대한 자격증·교육 이수증·경력증명서 등 근거 자료 등
  - \* 자격증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가점 증명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.

## 6. 유의사항

- ① 『산불 위치관제시스템』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가 지급 될 예정으로 『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 제18조에 따라 근로자 위치정보(위치확인, 산불위치 좌표,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)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
- ② 신청서 작성 시,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잘못된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,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③ 근무지까지의 출·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.
- ④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⑤ 「산불전문예방진화대」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2장)상의 「**기간제 근로자**」로서 상습적으로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, 욕설·폭언, 음주·도박, 근무지 이탈·태만, 업무방해,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·지시에 불응·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,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.
  - \*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
    -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및 위반 : 1회 시 경고, 2회 시 퇴출
    - 주요 범죄(음주운전, 도박, 폭력, 성추행, 성희롱 등) : 즉시 퇴출
    - 근무시간 중 음주, 산림 내 흡연, 근무태만, 각종 선동, 위해, 협박 등 : 1회 시 경고, 2회 시 퇴출
    - 기타 근무 부적응자 : 면담 후 결정
  - ※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
- ⑥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, 신청인원 미달 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⑦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,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⑧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.



(뒷면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, 구직등록 여부, 계약 체결, 중앙부처·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(사업 관련 각종 연구·설문조사 포함)
- 수집·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·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·이용기간
필수항목	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성별, 연락가능한 전화번호	동의일로부터 10년
	(가구원) 성명, 주민등록번호	참여자 선정종료시
선택항목	(본인 및 가구원) 재산, (본인) 기초생활수급자여부, 차상위계층여부, 한부모가정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	참여자 선정종료시
취업취약 계층항목	(본인) 북한이탈주민여부, 여성가장여부, 위기청소년가족여부, 결혼이민여성여부, 장기실업자여부, 장애인여부,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	동의일로부터 10년
	(본인 및 가구원) 건강보험료 부과액	참여자 선정종료시

2.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국가보훈처, 지방자치단체, 한국고용정보원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·제공 목적 : 건강보험부과금액,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, 가구재산,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, 구직활동정보,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,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
-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: (본인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참여기간, 월별 지급액, 계좌번호,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, 참여자 정보
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제공일로부터 6개월(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)

3.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-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
- 수집·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: (본인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 (가구원)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일 경우)
- 고유식별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: (본인) 동의일로부터 10년, (가구원) 참여자 선정 심사

※ 귀하는 상기 1~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(참여자 선정 제한 등)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 (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)

※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

성명	관계	1. 수집·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

2021년 월 일

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

【붙임 2】

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

※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조 회 자	성 명	춘천국유림관리소장	법인등록번호	221-83-00444
	주 소	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5		
	전화번호	033-240-9932	조회목적	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
	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			

동 의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조회목적	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
	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			

본인은 2021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1년 월 일

위치조회 동 의 자	②
---------------	---

춘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

## 세부 심사 기준표

구분	기 준	배점	비고
서류심사 (50점)	[우선선발대상] 취업취약계층(10점) - 저소득층, 장애인, 장기실직자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 등	10	관련 증빙서류 상
	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(10점) - 세대주+부양가족 3명 이상 - 세대주+부양가족 2명 이상 - 세대주+부양가족 1명 이상 - 세대주+부양가족 없음 - 해당없음(비세대주)	10 8 6 4 0	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 납부증빙 등
	산림분야 종사경력(10점) - 5년 이상 - 3년 이상 ~ 5년 미만 - 2년 이상 ~ 3년 미만 - 1년 이상 ~ 2년 미만 - 1년 미만 - 해당없음	10 8 6 4 2 0	-산림관련 공공기관 (산림청, 지자체 등) -산림관련 유관기관 (산림조합 등) -산불진화대, 감시원, 예찰단 등 산림분야 근로자 등
	운행수단 보유유무(7점) - 차량 보유자 - 이륜차 보유자 - 미보유자	7 4 0	면허소지 및 차량운행 가능자(소유·대여)
	산불관련 교육이수 여부(8점) - 임업기능인 + 산불전문교육 이수 - 임업기능인교육 이수 - 산불전문교육 이수 - 해당없음	8 5 3 0	산림교육원 교육이수 *구 산림인력개발원 포함 -임업기능인교육(6주) -산불전문교육(3일)
	참여자 거주지역(5점) - 20분 이내 출·퇴근(출동) 가능 - 40분 이내 출·퇴근(출동) 가능 - 60분 이내 출·퇴근(출동) 가능	5 3 1	근무지 기준
	체력검정(20점) - 상위 15% 이내 - 상위 16~30% 이내 - 상위 31% 이상	20 15 10	등짐펌프(15kg) 메고 걷기(2km) 평가 <b>30분 이상 소요 시 탈락</b>
체력검정 및 실습(30점)	실습(10점) - 능수능란한 자 - 활용가능한 자 - 능력 미달자	10 7 4	기계톱 활용능력 평가
면접심사(20점)	품행 및 참여의지 [선발우대 가점 +1]	5	0~5점 면접관 자율배점
	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 [선발우대 가점 +1]	5	0~5점 면접관 자율배점
	산림보호 일반지식 [선발우대 가점 +1]	5	0~5점 면접관 자율배점
	기타(특기사항 등) [선발우대 가점 +1]	5	0~5점 면접관 자율배점
가산점(10점)	[취업지원대상자] 국가보훈관계법령상 취업지원 대상자	5%~10%	각 전형단계 모두 적용

※ 전체 점수 중 동점자 차등기준: ① 취업취약계층 ②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③ 체력검정 우수자  
 ※ 취약계층(60%) 우선고용 기준에 의거 최종합격자 변동 가능  
 ※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 《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》

### <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>

**가. 저소득층** : 가구원(주민등록세대원)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\*가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(단,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) ※'노인장기요양보험료'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

※ 저소득층 판단을 위한 "가구원 수" 및 "건강보험료 부과액"은 **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함**

- "가구원 수"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수를 확인, "건강보험료 부과액"은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
- 다만, **신청자의 주민등록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민등록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**,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가 건강보험 부양관계를 증빙\*하도록 하고, 사업담당자는 그 증빙에 따라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액으로 신청인의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(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를 포함)

\*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
 (예시) 조부모가 주민등록이 다른 삼촌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

❖ ①수행기관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(이름·주민번호)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보연계를 요청하고 ②제공받은 "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"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

· 그러나 **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고, 신청자가 그 사실을 증빙한 경우**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산금액에서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저소득층 여부 판단

※ **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**  
 :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대조하여,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자격확인서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며, 자격확인서상 부양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님을 확인 → 일모아시스템에서 "이의신청" 버튼을 클릭하여,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에 등록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

※ **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,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활용 시 "가구원수"(주민등록세대원)에는 포함**

※ **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활용한 저소득층 판단방법**

- "가구원수"에 따라, 해당 "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"이 기준표의 해당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이면, 기준 중위소득 65%(1인가구는 120%) 이하로 판단 (예시) 2인 가구, 직장가입자의 경우 :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69,016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→ 저소득층 해당

**<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>**

(21년 기준, 단위: 원)

가구원수	소득기준*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**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193,000	75,224	30,663	75,461
<b>2인</b>	2,007,000	<b>69,016</b>	23,243	69,718
10인	6,567,000	228,860	248,783	233,144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

\* 가구원수 1인 : 기준 중위소득 120%, 가구원수 2인 이상 : 기준 중위소득 65% 해당 금액

\*\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

**나. 장애인** :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(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제1항)

**다.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** : 공공 취업알선기관(고용센터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)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

- 청년(만 15세~만 34세)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,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,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

\*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

❖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·제공되나,

- ①워크넷(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)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,
-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\*\*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

\* 고용센터, 장애인고용공단, 여성새로일하기센터,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

\*\*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

**라. 결혼이민자** :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『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』 제2조제3호)

- ❖ (국적 취득 전) 외국인등록증의 F2, F5,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
- ❖ (국적 취득 후)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

**마. 여성가장** : ①미혼여성이거나, ②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\*하는 여성

- \* ①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
- 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
- ③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**제출서류**

구분	첨부서류	
공통사항	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	
선택사항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	

**바. 성매매피해자** : 『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

❖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

**사.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**(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)

**아. 북한이탈주민** :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북한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(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호)

❖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

**자. 위기청소년** :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,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,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(6개월 이내 만기 퇴소)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, ④15~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·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

❖ ①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, ②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, ③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

**차. 갱생보호대상자**

❖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(민간법인 7개소)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

**카. 수영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**

❖ 교정시설(교도소, 구치소)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

**타. 노숙인** : 상당기간 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(『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1항)

❖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, 상담보호센터 등)에서 받은 추천서

**파. (‘21년 한시적용 사항) 코로나19로 실직·폐업 등을 경험한 자 :**

- ①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,
- ②(사실상) 폐업·휴업한 자영업자,
- ③소득이 급감한 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노동자  
(‘20.2.23., 코로나19 위기 경보 “심각 단계” 발령 이후에 한함)

**<대상자 정의 및 확인 여부>**

① **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**

- 실직자 : ‘20.2.23.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

\*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·취득일 확인 가능(단,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여부는 별도 증빙서류 수령, 면접 등을 통해 확인 필요)

- 무급휴직자(무급휴업조치자 포함) : ‘20.2.23.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·휴직 상태인 자(단, 『고용보험법 시행령』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)

※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【붙임10】 참조

② **(사실상) 폐업·휴업한 자영업자** : ‘20.2.23. 이후 폐업·휴업하였으며,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

- 폐업여부 : 일모아시스템 조회 또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폐업확인서

- 휴업여부 :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휴업확인서

- 국세청에 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‘20.2.23. 이후 사실상 휴·폐업 하였음을 증빙\*

\* **사실상 휴·폐업인정기준, 업종제한여부(준업종 또는 집합금지업종 등), 증빙서류 등은 개별 사업·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**  
(매출액 증빙서류 예시 : 소득금액증명원, 과세표준증명원 등)

③ **특고·프리랜서·플랫폼 종사자** : ①,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, ‘20.2.23.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(일모아시스템 확인 불가)

\* 단, 소득 ‘급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자율 설정  
(예 : 용역계약서, 위촉서류,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)

※ 신고,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·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